

「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」 개정문

개정 2006. 2. 28. · 시행 2006. 3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「교내학술연구비세칙」제5조-⑥-다 (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) 에 의거 인문사회과학과, 자연과학으로 분류한다.

①교내 논문 분류

1. 인문사회 :

(1) 인문학 : 신학, 상담학, 영미어문학부, 동양어학부

(2) 사회과학 : 디지털경영학부, 사회복지, 유아교육

2. 이공 :

(1) 의약학 : 간호학, 물리치료학, 약학

(2) 자연과학 : 생명과학, 식품영양학, 동물과학부, 컴퓨터과학부, 화학, 환경원예디자인학부

(3) 공학 : 카메카트로닉스

3. 예체능 : 생활체육학, 음악학부, 예술디자인학부, 건축학과

② 기타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분야를 따른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대학논문집 편집) ①대학 논문집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제1조의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각각의 편집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각 2인의 편집위원을 연구진흥실장이 선임한다.

③편집위원회는 대학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의뢰, 게재여부 및 편집방법을 결정한다. 만일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논문투고 및 편집규정) ①투고자는 삼육대학교 교원에 한한다. 그러나 공저자에 교원이 아닌자가 포함될 수 있다.

②투고자는 원고를 작성할 때 “논문작성지침”에 따라야 하고,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③논문의 게재여부와 수정 또는 재작성 지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④논문의 게재는 중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,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.

⑤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.

⑥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